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7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정희용・구자근・주호영

송언석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윤재옥 • 이만희 • 최은석

박준태 • 우재준 • 조지연

박형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.

이에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 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 신설).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3(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) ①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통합관리원(이하 "통 합관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통합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통합관리원은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의 면적,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통합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세계유산의 보존 · 관리 및 활용
 - 2. 세계유산의 홍보 계획 수립ㆍ시행
 - 3. 세계유산의 보존 ·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
 - 4. 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
 - 5. 그 밖에 통합관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 - ⑤ 통합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

둔다.

- ⑥ 통합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원의 설립·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통합관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8조의3(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의 설립) ① 세계유산의 보존 ・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통합관리원(이하 "통합관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통합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통합관리원은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의 면적,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. ④ 통합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. 1. 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활용 2. 세계유산의 봉보계획 수립・시행 3. 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

- 4. 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

 협력 체계 구축
- 5. 그 밖에 통합관리원 설립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
- ⑤ 통합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⑤ 통합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원의 설립·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수 있다.